

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 1. 31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96. 2. 26
- 다. 상정일자 : 96. 2. 29 (제42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 병 일

나. 제안이유

- 공무원복무규정(대통령령 제14825호 '95. 12. 14)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 개정코자함.

다. 주요골자

-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변경 (안 제18조)
 -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(안 제19조 제4항)
 - 이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일수는 20일초과 불가
- 연가일수의 삽입 (안 제20조)
 - 결근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 → 공제
- 공가범위 확대 (안 제22조)
 - 병역법 등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참가 및 투표시 공가처리
 - 의료보험법 시행령에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교육훈련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 공가적용 (신설)
- 특별휴가 범위확대 (안 제23조)
 -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6일간 휴가 허용
 -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 허가 (신설)

○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구체적 명시 (안 제27조 신설)

- 특정 정당이나,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희)

○ 본 조례개정(안)은 공무원복무규정(대통령령 제1482호 '95. 12. 14)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(안)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써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